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14. 김용민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 9.)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 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 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 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 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 재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 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 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우수한 법관 확보의 어려움, 법관 고령화,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이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법관 수급을 원활히 하고 재판지연의 심화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취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 부족, 전관예우나 후관예우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 법관 임용에 10년의 법조경력요건을 요구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을 임용하려 했던 법조일원화제도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25년 임용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안 신속 처리 필요 및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 임용 및 전관예우·후관예우 방지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 법조경력요건은 1년 정도로 완화할 필요
- 최소 법조경력요건으로 3년이 적당한지, 5년이 적당한지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 정리 필요
-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낮추더라도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가능함. 최소 법조경력요건은 3년으로 낮추고, 업무특성에 맞게 법관 임용 트랙을 다양화할 필요
- 판사장학생'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법원이 다양한 법관 임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